

# 삼기중학교학생생활규정

제정 2004. 3. 2.	개정 2013. 3. 2.
개정 2005. 3. 2.	개정 2014. 3. 2.
개정 2006. 3. 2.	개정 2015. 3. 2.
개정 2007. 3. 2.	개정 2016. 3. 2.
개정 2008. 6. 1.	개정 2017. 3. 2.
개정 2009. 6. 1.	개정 2018. 3. 2.
개정 2010. 3. 2.	개정 2019. 3. 2.
개정 2011. 3. 2.	<b>개정 2020. 9. 1.</b>
개정 2012. 3. 2.	개정 2021. 3. 2.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삼기중학교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제1항, 제17조, 제18조의 4, 제2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1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

제3조(학생의 인권보장 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보장한다.

③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④ 학칙과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9.1.】

제4조(학교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규정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019, 신설)

③ 학교장은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하여 소속 학생에게 학기당 2시간 이상 및 교직원, 학부모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 제2장 학생의 권리

제5조(학생 인권 보장)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제6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②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학생,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을 포함한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신설 2020.9.1.>

③ 학교는 차별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신설 2020.9.1.>

제7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신설 2019.3.2.>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에 없는 교내·외 행사 참석을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는다.<신설 2020.9.1.>

③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신설 2020.9.1.>

제8조(개성을 실현의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② 교복(춘추복·하복·동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0.9.1.>

③ 방한용 덧옷 등의 착용 여부와, 색상·형태 등은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신설 2020.9.1.>

제9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의 정보를 공개 청구 할 수 있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이 정확하지 않거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거나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으면 고치거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신설 2020.9.1.>

제10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교는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 활동을 보장한다.

② 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학생회 예산으로 편성하고 학생회가 예산을 운영하며, 담당교사를 통해 개산급으로 집행할 수 있다.<신설 2020.9.1.>

③ 학교는 성적, 징계 등을 이유로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

하지 않는다.<신설 2020.9.1. >

④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 교사로 둘 수 있다.<신설 2020.9.1. >

⑤ 동아리는 학술제, 예술제, 축제 등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신설 2020.9.1. >

**제11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가 있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보충수업이나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③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본조신설 2020.9.1.】

**제12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의 생리 공결을 보장하며,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충분한 보건시설과 체적한 환경(냉난방, 미세먼지 제거 등)을 확보하고 유지한다.<신설 2020.9.1. >

**제13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1.】

**제14조(안전에 관한 권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주민과 협력한다. 【본조신설 2020.9.1.】

**제15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몸과 마음의 발달을 위해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보장하며 정규교과 시간 외의 활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본조신설 2020.9.1.】

**제16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지 않는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보관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때로 최소화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검사를 하지 않는다.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알기 쉽게 표시한다.

③ 학교는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다.

#### 【본조신설 2020.9.1.】

**제17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친구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를 달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의 없이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④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때는 이를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0.9.1.】

**제18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0.9.1.】

**제19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가 있다.

④ 학생은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⑤ 학교의 장은 교지를 포함한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 누리집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을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0.9.1.】

**제20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생활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 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한다. 【본조신설 2020.9.1.】

**제21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학생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1.】

**제22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해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의 청구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본조신설 2020.9.1.】

### 제3장 학생 생활

제23조(기본 행동) ① 학교 구성원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② 학생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③ 학생은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④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신설 2020.9.1.>

⑤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신설 2020.9.1.>

⑥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 상징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신설 2020.9.1.>

⑦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제24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사용한다.

② 방과후나 휴일에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 등 학교 시설을 이용은 학교장에게 허락을 받는다.

③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④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제25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26조(수업 태도)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지킨다.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으며,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④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⑤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신설 2020.9.1.>

제27조(휴식시간과 여가활동) ① 학교장, 교직원 등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③여가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의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규칙을 지킨다.<신설 2020.9.1.>>

④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신설 2020.9.1.>>

**제28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뚜렷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9. 기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 매체물·약물·물건 등

**제29조(소지품 검사)** ①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8조 제1항이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 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제28조 제1항이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다른 사람과 흡입할 수 있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③소지품을 검사할 때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하여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간결하고 신속하게 한다.

④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제30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①제29조와 제30조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현행법상 청소년이 소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은 학교가 보관하며, 즉시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교가 보관하고 있음을 알린다.

②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학생의 물품은 5일 이내에 보호자와 상담한 후 즉시 보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교육활동 시간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사가 보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9.1.】

**제31조(용모)** ① 학교는 학생의 두발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를 제한하지 않는다.  
② 학생은 교복 착용 여부, 교복 착용 시기, 치마나 바지 착용 등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개정 2020.9.1.】

**제32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바른말을 사용한다.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③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신설 2020.9.1.〉  
④ 타인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33조(전자기기 사용)** ① 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 행사,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교사는 교육활동 시간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학생이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교사가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주의를 3회 받으면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한해 5일 이내에서 해당 전자기기를 보관 조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보관 조치가 3회 이상일 때 또는 학생이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고사(시험)기간 동안 전자기기는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사(시험) 중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본조개정 2020.9.1.】

**제34조(체벌금지)** 학교에서 체벌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하며, 특히 금지하는 체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35조(교사의 권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행동개선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와 의견 제출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36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①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②교사는 학생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또는 방과 후 교육
4. 망가진 시설, 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요구
5. 학부모 통보와 상담
6.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③교사가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진다. 【본조신설 2020.9.1.】

##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징계

**제38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학생의 생활교육과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육과정부장, 학생인권안전부장, 진로상담부장, 각 학년부장, 학년별 학부모 대표로 한다.

③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부부장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고, 학생인권부장이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④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나 담임교사에게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학교생활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39조(징계 원칙)** ①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 한다.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행동과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다.

**제40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기간은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기간 최소 10일 이상)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 한다.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41조【징계 방법】** ① “학교 내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실시한다.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대상 학생이 위탁기관에 불참 또는 이탈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③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한다.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④ “출석정지”는 출석정지 처분기간(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 조치 포함)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며, 학교나 해당 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9.1.>

**제42조【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 봉사

1. 학교환경 정리활동
2. 교내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③ 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 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 ④ 출석정지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20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9.1.】

**제43조(징계심의, 진술권 보장 및 징계통보)**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품성, 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에게 듣는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44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견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징계 결과가 통보된 후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징계 경감과 해제)** ①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해당 학생이 문제 행동을 고칠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처벌의 경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시험)에 응시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신설 2020.9.1.>

## 제6장 규정의 개정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삼기중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은 교사위원 3명, 학생위원은 3명(전체 인원의 40% 이상), 학부모 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9.1.>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문현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와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 사람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개정안 발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교사회의 의결
3. 학부모회의 의결
4. 학생회의 의결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제48조(문현조사 및 의견수렴)** ①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문현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9조(심의 및 결정)** ①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50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51조【연수와 교육】** 개정한 학교생활규정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또는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 이 규정이 명시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논란이 있는 사항은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